

교육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처리결과 알림

1.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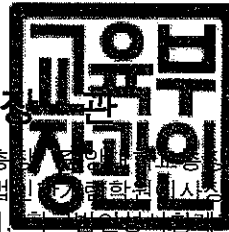
- 「행정절차법」 제44조제4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2013-85(2013.3.20.) 및 교육부 공고 2013-10(2013.5.8)

2. 귀 기관에서 제출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의 개정(법률 제 11622호, 2013. 1. 23. 공포, 7. 24. 시행)으로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외부회계감사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감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 귀 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은 향후 교육현장의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번 법령 개정안에 반영되지 아니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교육부



수신자 계명대학교총장, 건국대학교총장, 광주기톨릭대학교총장, 한국승강기대학교총장, 학교법인경희학원이사장, 학교법인서림학원이사장, 학교법인한양학원이사장,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협의회, 전국사립대학재정관리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대학교총장협의회 원이사장

주무관 황오일 행정사무관 신정선 사립대학제도 전결 2013. 7. 5. 과장 신인섭

협조자

시행 사립대학제도과-2893 (2013. 7. 5.)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www.moe.go.kr

전화번호 02-2100-6935 팩스번호 02-2100-6909 / liebe51@moe.go.kr / 비공개(5)